

# S/W 불법복제 단속대비 사전지식



정보통신부  
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
Program Evaluation & Motion Committee  
위원회 홈페이지 [www.pdmc.or.kr](http://www.pdmc.or.kr)  
불법복제신고센터 [www.copy112.or.kr](http://www.copy112.or.kr)

정 보 통 신 부  
프 로 그 램 심 의 조 정 위 원 회

##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...

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1987년 12월에 설립된 S/W지적재산권 보호 전문기관으로,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분쟁조정·알선을 비롯하여 컴퓨터프로그램감정 및 등록 업무와 S/W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조사·연구, S/W 불법복제 단속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.

### 설립근거

-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5조

### 연혁

- 1987. 12. 29. 프로그램심의위원회 설립
- 1994. 10. 13.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명칭변경

### 주요기능

-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분쟁조정 및 알선
-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적·기술적 사항 심의
- 컴퓨터프로그램 감정 및 등록
- S/W임치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
- S/W 정품사용 교육·홍보
- S/W 불법복제 점검 및 단속활동 지원
- S/W 지적재산권 관련 조사·연구 등

# CONTENTS

- S/W불법복제 단속관련 규정 ..... 2
- S/W의 분류 ..... 3
- 불법복제 S/W의 구분 ..... 4
- S/W불법복제 유형 ..... 5
- S/W의 불법 사용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8단계 ... 10
- 정품 S/W사용 관리방법의 실천 ..... 11
- S/W관리규정(예시) ..... 12
- S/W불법복제 상담 사례 ..... 14
- S/W Key-list 등록신청 안내 ..... 23



## S/W 불법복제 단속관련 규정

조 항	내 용(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)	벌 칙	상습범	친고죄
제29조 제①항	복제 · 개작 · 번역 · 배포 · 발행 및 전송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(제46조제1항)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(제47조)	○
제29조 제④항 제1,2호	프로그램저작권 침해프로그램의 국내 배포목적 수입, 침해프로그 램의 복제물을 지정취득후 업무 상 사용			
제30조	기술적보호조치			
제29조 제②항	성명표시권 등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제46조제3항)		○
제29조 제④항 제3호	권리관리정보			

### ※ 양벌규정(제50조)

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· 단체 · 사용자(기업주)에게도 벌금형을 부과



## S/W의 분류

### 상용 S/W (정품)

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획득한 후 사용해야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.

### 프리웨어 (FreeWare)

사용자가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(예를 들어 개인목적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, 배포금지 등)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예컨대 문서편집 S/W '어도비 아크로벳 리더', MS Explorer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
### 셰어웨어 (ShareWare)

정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기능이나 사용기간, 사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조건을 파악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.

### 공용 S/W (Public Domain Software)

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소프트웨어로서, 일반인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### 번들 (Bundle)

PC를 구매할 당시 OEM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, 번들S/W 단독판매는 불법이며 사용권한 등에서도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후 사용해야 합니다.



## 불법복제 S/W의 구분

※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S/W를 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

### ▶ 사용자가 단순히 복사한 경우

-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불법복제의 형태로, 개인용과 업무용 여부를 떠나 개인적으로 복제하거나, 여러 대의 기계에 복제하는 행위,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은 PC나 노트북에 설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.

### ▶ 불법복제한 S/W를 하드디스크에 탑재한 채 PC를 판매하는 경우(예, 조립 PC)

- 불법복제된 S/W를 컴퓨터에 탑재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복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. 판매업자가 S/W를 내장한 컴퓨터를 판매할 때에는 이것이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얻은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.

### ▶ S/W를 대여하거나 대여한 S/W를 불법복제한 경우

- S/W를 영리목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한 S/W를 복제하는 경우에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
### ▶ 정품S/W와 똑같이 복제되어 판매하는 경우

- 정품S/W와 똑같이 매뉴얼의 포장, 등록카드, 디스크 레이블 등을 복제하거나 복제품을 정품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.

### ▶ 온라인 통신망·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유통 시키거나 복제하는 경우

- 상용S/W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,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복제는 불법복제물을 올린 자와 내려받은 자, 이를 방조한 당해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,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### ▶ 시리얼 넘버의 공유·도용·배포·전송

- 정품 S/W의 시리얼 넘버를 친구와 공유하거나 도용·배포·전송 등의 행위도 불법입니다.



## S/W불법복제 유형

- ☞ 일반적으로 불법복제라 함은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지만, 넓게는 불법복제뿐만 아니라 무단 출력·공개·이용행위도 포함됩니다.
- ☞ 최근에는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등 그 기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, 또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장치를 무력화하는 기술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.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PC통신망의 전자게시판 등에 판매용 S/W를 공개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.

### ▶ 복제권의 침해(법 제7조제1항, 제29조제1항)

-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, 플로피디스크, 시디롬 등 그 밖의 매체에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(일부 수정·증감 포함)
-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컴퓨터시스템의 기억장치(RAM)에 저장하는 행위(프로그램 인식을 위한 일시적 저장은 제외)
- PC에 내장시켜 사용만 허락한 프로그램(번들용)을 CD롬 등 매체에 복제하여 판매·배포하는 행위
-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목적(사적사용)의 경우라도, 일반대중의 사용을 위하여 복제기가 설치된 CD복제점의 업자에게 의뢰하여 복제하는 행위(자신이 직접 가정에서 복제한 경우만 허용)
- 사적복제의 경우(가정 내에서) 대량 복제하거나, 친구에게 제공(배포)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행위



▶ **정당한 권원을 가진 소지·사용자에 의한 복제(백업용 복제)(법 제14조제1항, 제29조제1항)**

- 정당한 권원에 의한 소지·사용자가 멸실·훼손 또는 변질에 대비하여 복제물을 복제(백업용 복제물)함에 있어서의 대량 복제행위(1~2부 정도 인정)
- 백업용 복제물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시켜 이용하는 행위 또는 판매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정품프로그램의 소지·사용권을 상실한 상태(계약만료)에서 백업용 복제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(폐기해야 함)

▶ **교육목적 프로그램의 복제사용(법 제12조)**

-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정품프로그램을 대량 완전복제하여 학급생 전원에게 배포하거나 교육용 여러 대의 PC에 설치하는 행위
- 정품프로그램 1개를 구입하고, 구내통신망(LAN) 또는 서버(Server)를 이용하여 저작권자 허락없이 다수의 학생이 공동이용하는 행위
- 학교교원 대상의 교육에서 복제이용하는 행위(학생의 수업 제공 목적에만 인정됨)
- A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과 B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의 교환조건으로 대여하는 행위(유사대여, 저작권자의 잠재적 시장 침해가 됨)
- 교과용 도서에 게재 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게재 또는 복제(CD롬 보완 교재)하는 행위

▶ **개작·번역권 침해(법 제7조제1항, 제29조제1항)**

-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이용하여 원래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
-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어로 된 프로그램을 한글로 번역하는 행위
-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사용허락 받은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변환하는 행위(이른바 디컴파일)



▶ **배포·공표권 침해(법 제7조제1항, 제29조제1항)**

-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된 일체의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
-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
-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서 다수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서버 또는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설치하거나 공표·배포하는 행위
- 저작권자의 성명·제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여 프로그램을 공표하는 행위

▶ **사용허락권·대여권 침해(법 제17조, 제19조제2항)**

- 정품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에 복제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
-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제공한 불법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
-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프로그램을 영리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
- 정품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, 반환하면 값을 할인하거나 중고 프로그램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
-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허락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사용방법·사용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
-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대량 소지하는 행위
- 공동저작권 프로그램을 전원의 사용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
- 저작권자 불명 프로그램을 보상금 공탁없이 사용하는 행위



▶ **전송권 침해(법 제2조제7호, 제29조제1항)**
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무선, 유선(구내통신망포함)으로 전송하는 일체의 행위
- 공중을 대상으로 전송할 경우뿐만 아니라, 그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
- 정품프로그램 1개로 구내통신망 또는 서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(2인 이상)이 공동이용하는 행위
-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(홈페이지, 게시판)에 띄우는(uploading) 행위
-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(download)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

▶ **권리관리정보 등의 침해(법 제2조제8호, 제29조제4항제3호)**

-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의 '명칭(제호), 창작자의 인적사항, 창작연월일, 저작권자(양수자)의 인적사항, 정당한 권원의 소지·사용자(보유자) 성명·인적사항, 프로그램의 종별, 사용방법, 사용조건(가격 등), 프로그램 사용허락권자의 관련 정보(전화번호, 주소, 기타 사용할 때 유의사항) 등 프로그램의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변경·은닉·훼손 행위



##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벌칙규정

**제46조(벌칙)**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1.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
2.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3.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

②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한 자
2.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
3.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
4.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④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업을 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**제47조(상습범)**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**제48조(고소)** 제46조제1항(제3호의 경우중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) 및 동조 제3항제2호·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**제50조(양벌규정)**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

**제51조(과태료)** ①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

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

## S/W의 불법 사용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8단계

### Step 1. 무료 점검용 S/W를 Down-Load 받는다.

- www.pdmc.or.kr 에 접속하여 무료 점검용 S/W를 Down-load 받아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익힌다.

### Step 2. 사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S/W를 조사한다.

- 직원들에게 각자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S/W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. (제어판-프로그램 추가/삭제)에 나오는 List 참조)
- 점검용 S/W에서 나온 최종결과 및 「제어판-프로그램 추가/삭제」에 나오는 상용 프로그램 리스트를 참조한다.

### Step 3. 정품 S/W인지 불법 S/W인지 체크한다.

- 보유하고 있는 S/W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'증서' 를 확보한다.
  - S/W 설치에 사용된 모든 정품S/W의 디스크와 CD
  - 구매시 계약서(라이선스 계약서 등) 또는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 증서
  - 원본 사양서 또는 안내책자와 참조 서류
  - S/W가 이미 설치된 경우 컴퓨터 송장(送狀)과 S/W 구매 송장(送狀) 등
- ※ 정품임을 증명할 수 없는 S/W는 모두 불법 S/W로 간주 (불법복제 S/W의 구분 참조)

### Step 4. 불법 S/W를 해당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한다.

- 불법복제한 S/W를 해당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한다.
  - 「제어판 > 프로그램 추가/삭제」와 「탐색기 > 프로그램 파일」에서 해당S/W를 모두 삭제한다.
- 가능한 한 레지스트리 기록까지 모두 삭제(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맷을 해야 가능)

### Step 5.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정품S/W 이외의 S/W 사용을 금지시키고 불법 S/W 사용시 처벌받게 됨을 주지시킨다. (필요시 서약서 첨부)

### Step 6. 신규로 구입해야 하거나 추가구입이 필요한 S/W 목록을 작성한다.

### Step 7. 필요한 S/W에 대한 견적요청 등을 S/W전문 유통업체에 문의를 한다.

### Step 8. S/W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기적인(월 또는 분기 1회) S/W 점검을 실시한다.



## 정품 S/W사용 관리방법의 실천

### ▶ 소프트웨어 관리자 지명

- 기관별, 부서별 관리책임자를 지명하고, 불법복제 등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합니다.

### ▶ 종업원의 법령준수의무

- 근무계약, 취업규칙에 저작권보호 및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사전에 주지시킵니다.

### ▶ 종업원의 교육실시

-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초지식 등을 교육시키고 필요시 관련 기관(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)에 교육을 의뢰합니다.

### ▶ 정기적인 감사 실시

- 자체 점검용 S/W(www.pdmc.or.kr 제공)를 이용하여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조직 내의 정기적인 내부감사 또는 기업의 회계감사시에 S/W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.

### ▶ 불법복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

- 불법복제가 발견될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당해 행위자의 형사처벌(3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), 기업의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과 기업의 명예가 크게 추락됨을 철저히 주지시킵니다.

### ▶ 불법복제물 유입차단

- 게임소프트웨어 등 조직 내에서 외부로부터 유입하여 직무와 관련없는 행위(게임)를 철저히 단속합니다.



## S/W관리규정(예시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S/W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정품사용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관리책임)

- ①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부장을 두어 담당업무를 총괄하게 한다.
- ② 각 부·실·과 단위로 S/W 담당 책임자를 지명하고 관리부장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**제3조(S/W구입 등)** 관리부장은 각과의 S/W 담당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1. 매 회계연도마다 필요한 S/W의 조달계획 수립
- 2. S/W 구입, 사용허락계약체결, 사용자등록 등에 필요한 업무 수행
- 3. S/W 관리대장을 각 부·실·과 단위로 비치하고, 관리실태의 확인·점검
- 4. 기타 S/W 정품관리에 필요한 사항

**제4조(관리대장)** 관리부장은 별지와 같이 관리대장을 비치하고, 각 부·실·과의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관리 상태를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(검사)

- ① 관리부장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S/W관리에 관한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검사결과를 회사의 대표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실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교육 등)** 관리부장은 연○회 전체 임·직원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방지 및 프로그램저작권 보호 관련 법령을 교육시켜야 한다.

**제7조(세칙)**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관리부장은 운영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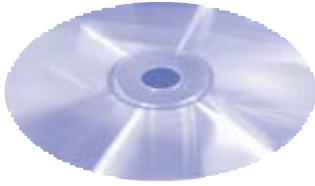
S/W 관리대장

S/W 명 칭 : \_\_\_\_\_

저 작 권 자 : \_\_\_\_\_ 등 록 번 호 : \_\_\_\_\_

담당자	책임자

구 입 신 청 자	과 직 급 : 성 명 :			
제 공 회 사 명	전 화 ( )			
구 입 방 법	구 매 임 대 기타 ( )			
허용복제매수			복 제 수 량	
사 용 장 소	관리책임자명	사용개시일	사용종료일	처 분 방 법



## S/W 불법복제 상담 사례

### 1. 정품 S/W인지 불법 S/W인지를 어떻게 구별 하나요?

☞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.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S/W 또는 사이트 라이선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. 또한 세금계산서, 납품확인서, 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사이트라이선스란 하나의 정품S/W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입니다.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.

### 2. 셰어웨어 또는 프리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하나요?

☞ 셰어웨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또는 구입의사 결정을 물은 후 구입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. 셰어웨어는 사용 또는 구입결정기간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얼마기간(보통 1개월)의 사용허락기간을 줍니다. 사용허락기간 또는 저작자가 허락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기간 경과 후 프로그램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. 프리웨어는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(예를 들어 개인목적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, 배포금지 등)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. 다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.

※ 셰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주어진 조건등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.

### 3. Freeware로 공개된 S/W를 Shareware 또는 상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Freeware로 알고 계속 사용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?

☞ 처음 공개시 프리웨어로 하여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서 나중에 셰어웨어 또는 상업용 S/W로 전환한 경우에는, 처음에 프리웨어로 알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프리웨어가 셰어웨어 또는 상업용 S/W로 전환한 것을 알고 해당 S/W를 계속 사용할 뜻이 있다면 당해 S/W를 구매하는 등 그 조건이나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아니하면 불법 S/W 사용에 해당됩니다.



#### 4. 트라이얼 버전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?

- ☞ 정품 S/W 사용에 기간 제한을 혹은 기능 제한을 둔 것으로 각 저작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. 다른 말로는 데모판, 체험판이라고 하며 기능 혹은 기간 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S/W 저작사의 홈페이지나 S/W포함된 readme.txt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5. 조립품 PC를 구입했는데 운영프로그램인 OS프로그램을 전에 사용하던 PC것을 설치하였습니다. 이 경우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?

- ☞ 전에 사용하던 OS프로그램이 패키지S/W라면 조립품PC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메이커PC의 OEM버전 OS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#### 6. S/W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- ☞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구매의사 또는 정품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품구입조건으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#### 7. 불법복제 단속에서 여러 S/W가 불법으로 적발되었습니다. 적발후 해당 S/W의 정품 CD를 사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나요?

- ☞ 이미 적발된 후이므로 적발된 S/W와 같은 일련번호를 가지는 CD가 아니라면 정품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해당 저작사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, 원칙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.

#### 8. S/W 삭제 방법은?

- ☞ 일반적인 win98용 S/W 인스톨버전 삭제 방법은 시작→설정→제어판→프로그램 추가/삭제란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며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삭제후 windows 디렉토리로 가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확장자가 dll인 파일을 찾아 지웁니다. 인스톨 버전이 아닌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 후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. 또한 레지스트리에 있는 해당 정보까지 삭제하기 위해서는 포맷을 해야합니다.

**9. S/W불법복제 단속에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?**

- ☞ 사용하고 계시는 S/W의 정품 인증 라이선스 또는 정품 인증 패키지(CD)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라이선스 또는 패키지가 없는 불법 S/W는 Windows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/제거 항목에서 삭제하셔야 합니다.

**10. 저작권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저작권보호 단체로부터 단속나왔을 경우 단속의 범위와 단속내용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불법사용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응해야 하나요?**

- ☞ 고소권을 위임받은 저작권보호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저작권 침해의 사실이 명백하거나 저작권 침해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법기관만이 영장발부 등을 통한 단속이 가능합니다. 저작권보호단체의 참여는 사법기관의 단속시 사건조사, 즉 수사를 위한 동행의 차원이지만 직접 단속을 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, 더욱이 단속시 단속대상자의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. 합의금 여부는 고소권을 위임받은 저작권보호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으나 합의금의 수락여부는 전적으로 단속대상자의 재량사항입니다.

**11.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멸실, 훼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복제한 프로그램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?**

- ☞ 그렇지 않습니다.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하는데 백업용 복제는 정품 S/W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멸실, 훼손,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백업용 CD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
**12.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S/W를 사용하는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12조에 의하여 복제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요?**

- ☞ 교육기관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사용은 프로그램저작자의 잠재적 시장을 대규모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락되고 있습니다.(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제2호) 즉 초·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종류, 용도, 비중,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.

### 13. 사설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목적으로 상용S/W의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허용되나요?

- ☞ 법 제12조제2호는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수업과정에 제공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 복제·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, 사설교육기관은 여기에 말하는 '학교'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, S/W를 복제하여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침해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### 14. 개발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등록하여야만 보호가 되나요?

- ☞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주장의 입증자료 제시를 위해서는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### 15. 정품S/W를 구입하고 CD를 분실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☞ 원칙은 다시 정품S/W를 구입해야 합니다. 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.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, 납품확인서, 구매계약서 정도입니다.

### 16. 프로그램의 원소유자가 부주의로 정품CD를 파손하여, 미리 백업 해 놓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 불법사용이 되나요?

- ☞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·사용하는 경우 그 복제물의 멸실, 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. 즉, 백업용 복제에 해당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백업이 허용되는 이유로 법은 '멸실·훼손 또는 변질 등'을 들고 있는데 '분실이나 도난'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. 이 경우에도 백업을 허용한다면 정품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### 17. PC를 구매할 당시 OEM계약에 의해 번들용으로 제공된 S/W의 CD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☞ OEM으로 제공된 번들용 S/W라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정당한 사용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만약 이러한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판매사로부터 그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.



### 18. OEM버전의 S/W에 대한 불법복제 범위는?

- ☞ OEM버전은 특정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판매된 것으로 마더보드 등을 교체하여 PC의 동일성이 깨졌다면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.
- ※ OEM(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)버전 : 메이커 PC를 구입시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본체와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OEM 구분은 메뉴얼 전면 상단에 "OOO(메이커 이름)의 새로운 PC와 함께 제공됩니다." 라는 멘트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.

### 19. 잡지사에서 특별행사 또는 부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사용하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에 저촉이 되나요?

- ☞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.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저작권자와 협의하지 않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잡지사에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### 20. 컴퓨터시스템의 기억장치 ROM에 프로그램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내장시키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인가요?

- ☞ 프로그램의 복제권 침해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유형물이라 함은 CD-ROM뿐만 아니라 컴퓨터하드웨어에 부착된 ROM, 또는 RAM의 기억장치에 기억시키는 것도 포함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ROM에 내장시켜 사용하거나, 내장시킨 PC를 판매하는 행위도 복제권·배포권의 침해가 성립됩니다.

### 21. PC대수만큼 정품 CD-TITLE을 구입한 후, "VIRTUAL CD-ROM" 을 이용하여 각각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S/W불법복제에 해당하나요?

- ☞ PC 수량과 동일한 정품 S/W 수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적법하며 위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, 멸실·훼손·변질에 대비하기 위한 복제로 볼 수 있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 다만, 하나의 프로그램을 서버에 저장시킨 후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대의 PC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(복제권·전송권)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.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.

## 22.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몇년인가요?

- ☞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유효합니다.

## 23. 메이커 PC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PC의 기능과 성능향상을 위해 PC의 주요부품을 교체한 경우 처음 구입한 PC에서 제공한 OEM의 OS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?

- ☞ CPU 또는 마더보드 등 PC의 주요핵심 부품이 교체되었다면 OS프로그램도 다시 정품으로 구입해 사용해야 합니다.

## 24. PC 수 만큼 정품 S/W를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전 PC에 인스톨했을 경우에 문제없나요?

- ☞ 원칙적으로는 각 정품S/W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각의 PC에 설치해야 불법복제 단속에서 정품사용의 입증이 됩니다. 그러나 불법복제 S/W 단속과정에서 PC대수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 25. 정품 S/W를 1개 구입하여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였을 경우 불법복제에 해당하나요?

- ☞ 구입한 S/W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. 구입한 S/W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이하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.

## 26. 과거 불법사용에 따른 흔적이 PC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처벌하나요?

- ☞ 과거 불법사용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. 단, 과거사용자로부터 물려받은 PC의 S/W가 불법임을 알고 삭제한 경우에는 남은 흔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.

## 27. 구버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품이 되어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.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☞ 사용하고 있는 S/W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락을 받거나 또는 쓰고 있는 S/W의 가격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.

**28. 상위버전을 구입하고서 실제로는 구버전 불법S/W를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?**

☞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이나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**29.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보유한 한글 워디안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한글 97를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저작권침해가 되나요?**

☞ 기본적으로 버전업(version up)등 개작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. 다만, 해당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하위버전의 사용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.

**30. 집에서 정품 S/W를 구입해 사용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의 PC에 인스를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가요?**

☞ 원칙은 불법사용에 해당됩니다. 하지만 집에서 정품 S/W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S/W가 특정장소, 예를 들면 가정같은 곳에서만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은 불법이지만, 사용장소나 사용용도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정품 CD와 사용 매뉴얼을 사무에 비치하고서 사용한다면 사무실에서 정품 S/W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.

**31. 개인용 PC(노트북 포함)를 연구소에 가져다 놓고 업무용으로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사적이용에 의한 예외로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?**

☞ 프로그램저작권제한 사유로서 법 제12조제4호는 '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(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)을 위하여 복제 또는 사용하는 경우'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, 연구소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용 PC의 경우라도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.

**32. 직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법인의 대표도 처벌이 되나요?**

☞ 불법S/W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처벌이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
**33. Windows 98의 상위 버전인 Windows 2000 정품 CD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특정 S/W를 실행하기 위해선 Windows 98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에는 Windows 98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불법인가요?**

- ☞ Microsoft사의 OS 라이선스 정책에 의하면 상위버전의 CD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위 버전의 사용은 금하고 있습니다.(Windows XP Professional은 하위 버전 사용가능) 그러므로 Windows 98을 따로 구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.

**34. 교육기관이나 PC방 등을 대상으로 나온 라이선스 CD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한다면 불법인가요?**

- ☞ 특정업체 등에 관한 라이선스는 각 저작사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한정적인 업종에만 판매 및 사용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
**35. 법인(단체)의 직원이 정품CD 1개를 구입한 후 본인 PC에 설치하고 동료에게 주어 다시 설치·사용하게 한 경우의 책임은?**

- ☞ 두 사람 모두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며 이 경우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만약, 법인(단체)에서 정품 CD 또는 복제품 CD 1개를 구입해서 전 직원에게 설치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라면 법인(단체)또한 제50조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**36. 사내에 개인용 노트북을 점검해서 불법 S/W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. 회사의 소유가 아닌 개인용의 소유물도 단속 대상인가요?**

- ☞ 단속의 기준은 PC 자체가 아니라 사업장이라는 공간에 대하여 행해지므로 개인용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. 따라서 단속이 이루어진 후이므로 해당 저작권사와 원활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.

**37. 통합패키지 S/W인 Visual-Studio 패키지 1개를 가지고 여러 명의 개발자가 Visual-Studio 내부의 Visual-Basic, Visual-C++, Visual-J++ 등을 각각 사용하면 불법인가요?**

- ☞ Microsoft사의 라이선스 정책중 Visual-Studio 라이선스는 1명의 개발자에 한하므로 1개의 패키지에는 1명의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위와 같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
**38.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2대의 P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2개 구입해야 하나요?**

☞ 그렇습니다. 법에서 원칙은 1PC에 1COPY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2COPY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.

**39.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죄가 친고죄라고 하는데 친고죄란 어떤 것인가요?**

☞ 친고죄란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.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.

**40. OEM으로 들어온 OS를 정품 Upgrade CD를 사용하여 상위버전으로 사용할 때 불법인가요?**

☞ OEM으로 설치되어 들어온 S/W는 컴퓨터 부품의 개념이므로 컴퓨터와 수명을 같이해야 합니다. 그러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.

**41. 불법복제 S/W를 판매한다는 스팸메일이 자주 와서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.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?**

☞ 스팸메일에 관한 신고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 (<http://spamcop.or.kr>)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 만약 사기 등의 금전적, 정신적 피해를 받으신 경우라면 사이버 경찰청 (<http://www.police.go.kr>)의 사이버 범죄신고를 이용하십시오.

**42. 와레즈 사이트를 신고하려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**

☞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S/W불법복제 신고센터 (<http://www.copy112.or.kr>)에 온라인 신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. 단, 허위 신상 기재시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신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
**43. 회사의 컴퓨터에 설치된 S/W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점검용 S/W를 배포해줄 수는 없나요?**

☞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점검용 S/W를 홈페이지 ([www.pdmc.or.kr](http://www.pdmc.or.kr))를 통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.



## S/W Key-list 등록신청 안내

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S/W지적재산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분쟁조정, 프로그램등록과 감정 및 S/W 공정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, S/W불법복제 단속지원 등 정품S/W사용 문화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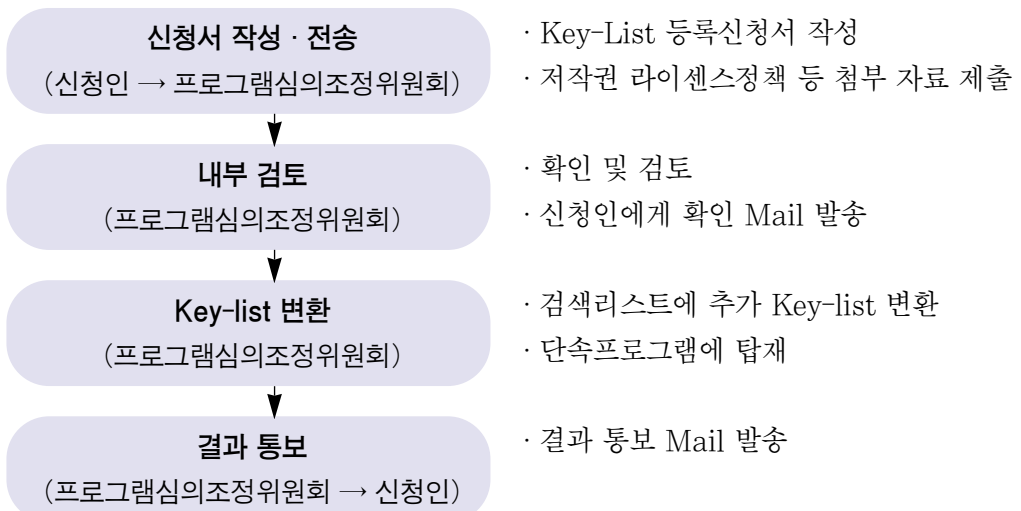
S/W업계는 인터넷 등 여러 경로를 통해 S/W가 불법 유통됨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또한 저작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S/W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권자의 협조 없이는 S/W의 Key-file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.

이에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모든 상용 S/W를 대상으로 S/W Key-list 등록신청을 받아 단속대상 S/W에 포함시켜 귀하의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.

- **신청방법** : 신청서(첨부 참조)기재 후 담당자에게 E-Mail  
 ※ 신청서는 위원회 홈페이지([www.pdmc.or.kr](http://www.pdmc.or.kr))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

- **신청대상** : Window기반 상용 S/W

### ■ 신청 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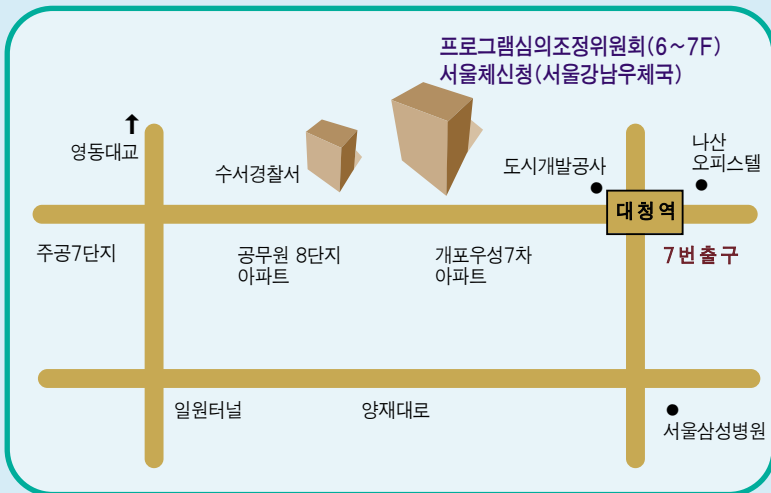




S/W 불법복제 신고는 [www.copy112.or.kr](http://www.copy112.or.kr)로!

- ◆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불법S/W 사용업체 및 부정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고, S/W불법복제의 개념·처벌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S/W불법복제신고센터([www.copy112.or.kr](http://www.copy112.or.kr), 080-055-0112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◆ 본 홈페이지에는 정품S/W사용에 관한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전국 8개 체신청별 S/W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통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.
- ◆ 또한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S/W저작권보호의 노력 없이는 선진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 어렵다는 판단하에, S/W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·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, 정부주도의 S/W불법복제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

## 찾아오시는길



- **지 하 철**: 3호선 대청역 7번출구 (도보2분)
- **버 스**: 87, 87-1, 813-2, 288
- **주 소**: 135-24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-4(서울강남우체국 6~7층)
- **홈페이지**: [www.pdmc.or.kr](http://www.pdmc.or.kr)

## S/W불법복제 신고 및 상담

- S/W불법복제 신고센터 : [www.copy112.or.kr](http://www.copy112.or.kr)
- 신고 전화 : 080-055-0112
- 팩 스 : (02)2040-3599